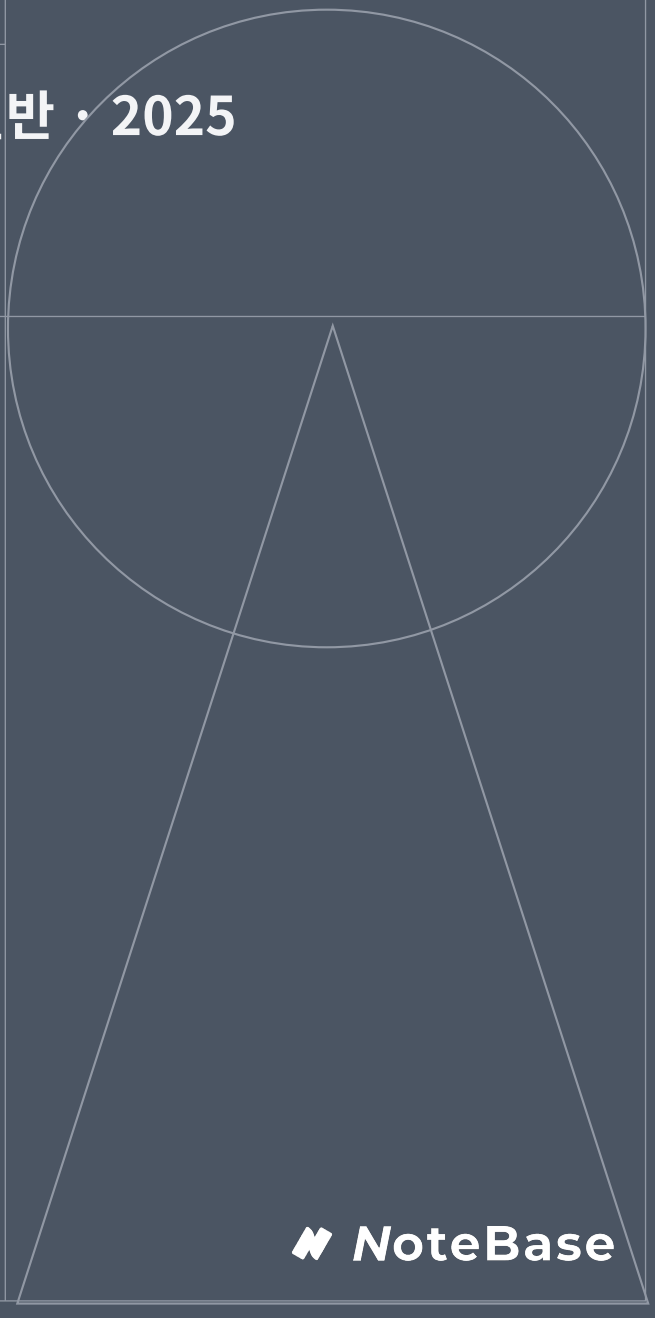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5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5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5**

1. 우편엽서의 규격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로 크기가 125㎜인 경우, 규격 외로 취급한다.

②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③ 50g까지 규격 외 사제엽서는 450원의 우편요금을 적용한다.

④ 가로 크기가 155㎜이고 중량이 2g인 경우, 규격 외로 취급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사제우편엽서의 규격요건과 규격외 취급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크기의 허용오차와 크기에 따른 최소 중량을 함께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제우편엽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아닌 자가 제작한 엽서로서, 우정사업본부 발행 우편엽서의 규격요건과 외부표시 사항을 충족해야 규격우편물로 취급된다.

**핵심 구분**

우편엽서의 크기는 세로 최소 90*mm*, 최대 120*mm*, 가로 최소 140*mm*, 최대 170*mm*이며 크기에는 ±5*mm*의 허용오차가 적용된다. 중량은 원칙적으로 2*g* 이상 5*g* 이하이지만, 세로가 110*mm*를 넘거나 가로가 153*mm*를 넘으면 4*g* 이상 5*g* 이하여야 한다. 이 문항에 적용된 요금표에서는 50*g*까지의 규격외 엽서에 450원을 적용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세로의 기준상 최대값은 120*mm*이지만 ±5*mm*의 허용오차가 있으므로 125*mm*는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 틀린 표현: 세로 크기가 125*mm*인 경우 규격 외로 취급한다.
- 올바른 표현: 세로 크기가 125*mm*인 경우에는 크기 허용오차 범위에 들어 규격 외로 취급하지 않는다.

② O

- 우편엽서의 문자·도안 표시에 발광·형광·인광 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③ O

- 이 문항에 적용된 요금표상 50*g*까지의 규격외 사제엽서는 규격봉투 25*g* 초과 50*g*까지의 요금인 450원을 적용하므로 옳다.

④ O

- 가로가 153*mm*를 넘으면 최소 중량이 4*g*이어야 한다. 가로 155*mm*, 중량 2*g*은 이 중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규격 외로 취급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최대 세로 120*mm*만 보고 허용오차 ±5*mm*를 빠뜨리기 쉽다. 또한 ④에서는 일반 중량 하한 2*g*만 보지 않고, 가로가 153*mm*를 넘을 때 최소 중량이 4*g*으로 높아지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로·가로의 기준값에 허용오차를 반영한 뒤, 세로 110*mm* 초과 또는 가로 153*mm* 초과인지 확인하여 최소 중량 4*g* 요건을 별도로 적용한다. 표면 표시와 요금은 크기·중량 요건과 분리하여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엽서 규격은 '세로 90~120, 가로 140~170, 허용오차 ±5*mm*'이고, '세로 110 초과 또는 가로 153 초과이면 최소 4*g*'이다.

NoteBase

2. 등기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등기 우편물이 우편집중국으로 발송된 이후에 반환청구될 경우, 반환청구수수료는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을 적용한다.

② 민원우편을 신청하는 발송인이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50g 규격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익일특급수수료)을 선납한다.

③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의 취급수수료는 수취인 수 1명 초과마다 내용문서 매수와 관계없이 내용문서 최초 1매의 반값으로 계산한다.

④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반송된 착불배달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착불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반송수수료를 징수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등기통상 우편물의 반환청구수수료, 민원우편 요금, 동문내용증명 수수료 및 착불배달 일반형 계약등기의 반송 시 징수액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수수료의 부과 단위와 포함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동문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를 2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내면서 그 발송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이다.
착불배달 일반형 계약등기는 계약등기의 부가서비스로, 배달될 때 수취인에게 우편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등본 최초 1매 수수료는 1,300원이고,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이 붙는다. 동문내용증명은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이 붙는다. 따라서 추가 수취인에 따른 내용문서 추가 수수료와 등본의 추가 매수 수수료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준등기 우편물을 우편집중국으로 발송한 뒤 발송인이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수수료로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을 적용한다.

② O
민원우편의 발송인이 회송 시 선납하는 취급요금은 50g 규격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익일특급수수료의 합계이다. 선지는 회송분의 구성 항목을 정확히 제시한다.

③ X
수취인 1명 초과마다 부과되는 동문내용증명 수수료는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이다. 650원은 등본이 1매를 초과할 때 추가 1매마다 붙는 금액이므로, 추가 수취인 수수료를 최초 1매 수수료의 반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수취인 수 1명 초과마다 내용문서 최초 1매의 반값으로 계산한다.
올바른 표현: 동문내용증명은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을 부과하고, 등본 1매 초과분에는 추가 1매마다 650원을 부과한다.

④ O
착불배달 일반형 계약등기가 배달되지 않아 발송인에게 반송되면 착불수수료를 제외한 우편요금과 반환수수료를 발송인에게 징수한다. 이때 발송인에게 징수하는 우편요금에는 등기취급수수료가 포함된다.

### 오답 포인트

③의 '최초 1매의 반값'은 등본 추가 매수에 적용되는 650원을 추가 수취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처럼 만든 함정이다. 추가 수취인은 '내용문서 1통 초과', 추가 쪽수는 '등본 1매 초과'라는 서로 다른 부과 단위를 구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 수수료 선지는 먼저 부과 단위를 확인한다. 동문내용증명의 수취인이 늘어나면 내용문서의 통 수를 기준으로 보고, 문서의 쪽수가 늘어나면 등본의 매수를 기준으로 본다. 반송·회송 선지는 누가 납부하는지와 우편요금, 등기취급수수료, 특급수수료, 반환수수료 중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동문 추가 1통은 1,300원, 등본 추가 1매는 650원이다.

NoteBase

3. 배달증명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터넷우체국의 '발송 후 배달증명' 신청은 배달완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② 선택등기 우편물이 무인우편함에 배달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가 가능하다.

③ 배달증명 우편물은 수취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지정된 대리수령인에게 배달이 가능하다.

④ '발송 시 배달증명'을 청구하면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은 5g 등기통상 우편요금을 적용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발송 후 배달증명의 신청 시점과 대상, 배달증명우편물의 대리수령 제한,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의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실제 수령인 등 배달 결과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서비스이다. 발송 후 배달증명은 우편물을 보낼 때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배달 후 별도로 그 증명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인터넷우체국의 발송 후 배달증명은 배달완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배달완료일로부터 D+2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선택등기는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되어 배달 완료된 경우에도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달증명우편물은 지정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등기우편물에 해당한다. 발송 시 배달증명을 청구할 때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은 5g 일반통상우편요금을 적용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인터넷우체국의 발송 후 배달증명은 배달완료일로부터 D+2일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달완료일 다음 날부터'가 틀리다.
틀린 표현: 배달완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배달완료일로부터 D+2일부터 가능하다.

② O
선택등기 우편물이 무인우편함에 투함되어 배달 완료된 경우에도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등기는 발송 시 배달증명이 아니라 발송 후 배달증명만 부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배달증명우편물은 지정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이다. 수취인이 부재하다는 사정만으로 지정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지정된 대리수령인에게 배달이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배달증명우편물은 지정 대리수령인에게 배달할 수 없다.

④ X
발송 시 배달증명의 배달증명서 송달요금은 등기통상 요금이 아니라 5*g* 일반통상우편요금을 적용한다.
틀린 표현: 5*g* 등기통상 우편요금을 적용한다.
올바른 표현: 5*g* 일반통상우편요금을 적용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다음 날'과 실제 신청 시점인 D+2일을 혼동하거나, ④에서 배달증명서가 등기로 송달된다고 생각해 요금 기준까지 등기통상으로 고르기 쉽다. 또한 일반적인 등기우편물의 대리수령 원칙을 배달증명우편물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③을 맞는 선지로 오인하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배달증명 문제에서는 신청 시점, 선택등기의 허용 범위, 대리수령 제외 대상, 증명서 송달요금 기준을 각각 분리해 판단한다. 인터넷 신청 시점은 D+2일, 선택등기는 발송 후 배달증명, 배달증명우편물은 대리수령 불가, 송달요금은 5*g* 일반통상으로 정리한다.

### 암기 포인트

인터넷 D+2, 선택등기는 발송 후, 배달증명은 대리수령 불가, 송달요금은 5*g* 일반통상이다.

NoteBase

4. 특별송달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우편송달통지서는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한다.

④ 발송인은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수취인의 주소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특별송달우편물의 취급 대상, 요금 산정, 중량 계산 및 주소 변경청구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 등기우편물에 적용되는 변경청구 원칙과 특별송달의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특별송달은 다른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서류를 등기통상우편물로 보내고, 송달 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로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부가취급 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특별송달은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이용한다. 송달통지서 1통을 회송할 때에는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을 적용하고, 첨부한 송달통지서 용지의 무게는 발송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배달 전 우편물은 발송인의 주소 변경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특별송달우편물은 주소 변경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특별송달은 송달 과정을 기록해야 하므로 등기취급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취급한다.

② O
특별송달우편물의 요금에는 발송 우편물의 통상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특별송달수수료뿐 아니라 송달통지서 회송을 위한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도 반영된다. 따라서 우편송달통지서의 회송 우편요금은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O
우편송달통지서는 특별송달우편물에 첨부되어 함께 취급되므로 그 용지의 무게를 우편물의 무게에 합산한다.

④ X
특별송달우편물은 배달 전이라도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 변경을 청구할 수 없는 우편물이다.
틀린 표현: 배달되기 전에 수취인의 주소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특별송달우편물은 배달되기 전이라도 수취인의 주소 변경청구가 불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④의 '배달되기 전'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우편물에 주소 변경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별송달은 송달의 법적 절차와 기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반 등기우편물의 변경청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특별송달 선지는 '등기통상만 가능', '송달통지서 회송요금은 일반통상 기본우편요금', '통지서 무게 합산', '주소 변경청구 불가'의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특별송달은 등기통상으로 보내고, 통지서 요금과 무게를 반영하며, 주소는 바꾸지 못한다.

NoteBase

5. 우체국쇼핑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쇼핑 상품 설명서는 소포우편물에 동봉할 수 없다.

② '꽃배달'은 우체국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③ '꽃배달' 신청인이 배달 하루 전 주문을 취소할 경우,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④ '전통시장'은 출하 시기의 농수산 신선식품, 소포장 가공식품, 친환경식품을 적기에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쇼핑의 상품 안내, 꽃배달 방식, 주문 취소 시 환불, 전통시장과 제철식품의 서비스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꽃배달은 제휴 화원이 꽃 상품을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이고, 제철식품은 출하 시기의 농수산 신선식품·소포장 가공식품·친환경식품 등을 적기에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상품 설명서는 소포우편물에 동봉할 수 없다'이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설명서는 소포우편물에 동봉할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우체국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이다. 꽃배달 상품은 우체국 집배원이 아니라 제휴 화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③ O — 신청인이 배달 하루 전에 꽃배달 주문을 취소하면 손해보상 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대상이 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전통시장'이다. 제시된 내용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제철식품' 서비스의 설명이다. 전통시장 서비스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서비스 설명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명칭을 '제철식품'에서 '전통시장'으로 바꾼 함정이다. ②도 우체국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집배원이 배달한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명과 핵심 대상을 연결해 판단한다. 꽃배달은 제휴 화원의 직접 배달, 제철식품은 출하 시기에 맞춘 식품 판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상품의 판로 지원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꽃배달은 화원 직배, 하루 전 취소는 전액 환불, 제철식품은 제철에 적기 판매, 전통시장은 상인 판로 지원이다.

NoteBase

6. 전자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봉서비스로 접수된 동봉물은 위탁제작센터로 발송하되 무료 등기소포우편물로 30㎏까지 가능하다.

② 동봉서비스(B5규격) 이용 시 봉함식(소형)에는 최대 6장, 봉함식(대형)에는 최대 20장까지 동봉 가능하다.

③ 봉함식(대형)에 내용문 없이 동봉물 3장만 발송할 경우, 기본 1장은 해당 규격 흑백 이용수수료(90원)를 적용한다.

④ 접착식 전자우편은 봉투 없이 제작 발송되며 흑백(B5규격) 양면인 경우, 전자우편 이용수수료(80원)를 적용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전자우편의 동봉물 발송 한도, 봉함식의 용지 규격과 접수 매수, 접착식의 제작 방식과 이용수수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봉함식은 출력한 내용문을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방식이고, 접착식은 별도의 봉투 없이 용지 자체를 접어 가장자리를 접착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전자우편 취급조건과 수수료표에 따르면 봉함식의 표준 용지는 A4이고, 소형봉투는 최대 6매,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 접수한다. 대형봉투의 동봉서비스는 최대 20매까지이다. 접착식 흑백은 A4/B5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은 60원, 양면은 80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동봉서비스로 접수된 동봉물은 위탁제작센터가 지정한 제작센터로 무료 등기소포우편물로 발송하지만, 무게 한도는 30*kg*이 아니라 20*kg*이다.
틀린 표현: '30*kg*까지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무료 등기소포우편물로 20*kg*까지 발송할 수 있다'이다.

② X
봉함식의 표준 용지는 B5가 아니라 A4이다. 또한 소형봉투는 최대 6매이지만 대형봉투는 최대 20매가 아니라 최대 150매까지 접수하며, 그중 동봉서비스의 한도가 최대 20매이다.
틀린 표현: 'B5규격', '봉함식(대형)에는 최대 20장'
올바른 표현: 'A4 규격을 기준으로 소형봉투는 최대 6매, 대형봉투는 최대 150매까지이며, 대형봉투 동봉서비스는 최대 20매까지이다'이다.

③ X
봉함식 대형봉투의 흑백 기본 1매 제작수수료는 90원이 아니라 130원이다. 90원은 봉함식 소형봉투 흑백 기본 1매의 수수료이다.
틀린 표현: '기본 1장은 90원'
올바른 표현: '봉함식 대형봉투의 흑백 기본 1매는 130원'이다.

④ O
접착식 전자우편은 별도 봉투 없이 제작·발송되며, 흑백 A4/B5 양면의 전자우편 이용수수료는 80원이다.

### 오답 포인트

②의 '대형 최대 20장'은 대형봉투 전체 접수 한도와 동봉서비스 한도를 섞은 표현이다. ③은 소형봉투 흑백 기본요금 90원을 대형봉투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자우편 문제에서는 먼저 봉함식과 접착식을 구분한 뒤, 봉함식은 소형·대형의 전체 매수 한도와 동봉서비스 한도를 따로 확인하고, 수수료는 봉투 크기·흑백 여부·단면 또는 양면 여부를 순서대로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봉함식은 A4·소형 6매·대형 150매·대형 동봉 20매이고, 접착식 흑백은 단면 60원·양면 80원이다.

NoteBase

7. 요금후납 계약을 위한 담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초 후납계약일부터 요금체납 없이 2년간 성실히 요금을 납부한 사람은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이다.
ㄴ. 계약우체국장은 우편요금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담보금 면제 혜택을 3년간 금지할 수 있다.
ㄷ.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에 요금납부를 2회 체납한 경우, 담보금 제공 면제가 취소된다.
ㄹ. 우체국소포 계약자는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요금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담보금 제공 면제가 취소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요금후납 계약자의 담보금 제공 면제 범위와 요금 체납에 따른 면제 취소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무체납 기간에 따른 일부·전부 면제, 체납 횟수에 따른 취소, 취소 후 면제대상 제외 기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담보금 제공 면제는 요금후납 계약자가 장래의 우편요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핵심 구분**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최초 후납 계약일부터 2년간 요금을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금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4년간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면제한다. 담보금 2분의 1 면제대상자가 면제 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체납하면 면제가 취소된다. 체납 때문에 면제가 취소된 후납계약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시상 해당 면제대상인 등기소포우편물 계약자는 면제 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하면 담보금 제공 면제가 취소된다. 따라서 ㄷ과 ㄹ이 옳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다. ㄱ의 '전액 면제'가 틀렸으며, 최초 후납 계약일부터 2년간 무체납이면 담보금은 전액이 아니라 2분의 1만 면제된다. ㄴ의 '3년간 금지'도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면제 취소일부터 2년간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ㄹ은 옳지만 ㄱ이 옳지 않다. ㄱ의 '2년간 성실 납부하면 전액 면제'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2년간 무체납이면 2분의 1 면제이고 4년간 무체납이어야 전부 면제이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다. ㄴ의 '3년간 금지'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계약우편관서의 장이 면제 취소일부터 2년간 담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④ O — ㄷ과 ㄹ은 모두 옳다. 담보금 2분의 1 면제대상자가 면제 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체납하면 면제가 취소되고, 고시상 해당 면제대상인 등기소포우편물 계약자가 면제 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해도 면제가 취소된다.

### 오답 포인트

ㄱ의 '2년'이라는 기간만 보고 전액 면제로 판단하거나, ㄴ의 면제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2년 무체납은 2분의 1 면제이고, 전부 면제에는 4년 무체납이 필요하며, 면제 취소 후 제외 가능 기간은 2년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체납에 따른 면제 범위를 '2년은 2분의 1, 4년은 전부'로 나눈다. 다음으로 일반 면제 취소 기준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자의 특별 취소 기준을 구별한 뒤, 체납 횟수와 산정 기간을 함께 대조한다.

### 암기 포인트

무체납 2년은 반액, 4년은 전액, 반액 면제 후 2년 안에 2회 체납은 취소, 소포계약자는 최근 1년 안에 3회 체납도 취소이다.

NoteBase

8. 감액요건을 충족한 우편물 중 우편요금 기본 감액률이 가장 낮은 것은?

① 1회에 3만 통 발송하는 요금후납 동일지역 상품광고우편물

② 1회에 15만 통 발송하는 요금별납 타지역 다량우편물

③ 1회에 5,000통 발송하는 요금후납 주간신문(등록)

④ 1회에 100통 발송하는 요금별납 서적우편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의 종류, 1회 접수 물량, 동일지역·타지역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감액률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 감액률은 감액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물량과 배달 권역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우편요금 할인 비율이다. 상품광고우편물과 다량우편물은 1만 통 이상부터 물량 구간 및 동일지역·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진다. 서적우편물은 40%, 등록된 주간 신문은 59%의 기본 감액률이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동일지역으로 1회 3만 통을 발송하는 상품광고우편물은 1만 통 이상 5만 통 미만 구간이므로 기본 감액률은 1%이다. 네 선지 중 가장 낮다.

② X — 타지역으로 1회 15만 통을 발송하는 다량우편물은 10만 통 이상 구간이므로 기본 감액률은 1.5%이다. '가장 낮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①의 1%가 가장 낮다.

③ X — 등록된 주간 신문은 기본 감액률이 59%이다. '가장 낮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①의 1%보다 훨씬 높다.

④ X — 요금별납 서적우편물은 1회 100통 이상이면 기본 감액 대상이 되고 감액률은 40%이다. '가장 낮다'는 판단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①의 1%보다 높다.

**오답 포인트**

발송 통수가 많으면 감액률이 항상 가장 높거나 낮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특히 ③과 ④는 물량 구간만 비교하는 상품광고우편물·다량우편물과 달리 우편물 종류 자체에 정해진 높은 기본 감액률이 적용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우편물 종류를 구분한 뒤 상품광고우편물·다량우편물은 물량 구간과 동일지역·타지역을 함께 확인한다. 각 선지의 감액률을 숫자로 바꾸어 비교하면 최솟값을 바로 찾을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3만 통·동일지역 상품광고 1%, 15만 통·타지역 다량 1.5%, 등록 주간신문 59%, 서적 40%이다.

NoteBase

9.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조력자의 경우에는 일반노무비, 교통비, 도움에 소요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편관서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ㄷ. 우체국장은 손실보상청구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현금 일시불로 지급한다.
ㄹ.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손실보상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손실보상의 요건, 지급 절차, 청구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통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우편물 손해배상의 기산점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수 = 사고를 당한 우편운송원·우편집배원 등을 도와준 조력자에게 그 도움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손실보상 = 적법한 우편업무 수행으로 특별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그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우편관서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 우편물의 분실·훼손 등 법에서 정한 우편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ㄱ은 옳다. 조력자는 일반노무비, 교통비 및 도움에 소요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ㄴ은 틀리다. 손실보상은 우편관서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ㄷ은 틀리다. 보수·손실보상 청구를 조사하고 심사하는 주체는 지방우정청장이며, 보수와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ㄹ은 틀리다. 보수·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은 우편물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이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만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조력자는 일반노무비·교통비·도움에 소요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우편관서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 올바른 표현: 손실보상은 우편관서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적법한 우편업무로 생긴 특별한 재산상 손실을 보전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뿐이다.

③ X
- ㄷ은 심사 주체를, ㄹ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제시하였다.
- 틀린 표현: '우체국장은 … 심사',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 올바른 표현: 지방우정청장이 보수·손실보상 청구를 조사·심사하며, 보수·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뿐이다.

④ X
-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이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우체국장은 … 심사',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 올바른 표현: 심사 주체는 지방우정청장이고, 보수·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뿐이다.

**오답 포인트**

ㄷ은 '현금 일시 지급'이 맞아서 전체가 옳아 보이지만 심사 주체를 우체국장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ㄹ도 불복소송의 3개월은 맞지만, 손해배상의 기산점인 '우편물을 발송한 날'을 손실보상에 붙인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수·손실보상·손해배상을 구분한 뒤 요건, 심사 주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각각 확인한다.
보수·손실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우편물 손해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결정 불복소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력자는 노무비·교통비·실비, 심사는 지방우정청장, 보상은 사실 발생일부터 1년, 불복소송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다.

NoteBase

10.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운송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취인 주소가 무인우체국으로 되어 있다면 무인우체국의 배달함에 배달할 수 있다.

② 도서지역 등 배달이 곤란한 지역이 아닌 경우, 국내등기소포 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명표 바코드에서 '서비스 종류'를 표시하는 번호는 EMS 프리미엄과 동일한 숫자를 사용한다.

④ 발송할 우편물량이 많아 1편의 운송편으로 일시에 발송할 수 없을 경우,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최우선으로 발송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특급우편물(EMS)의 배달 방법, 국명표 바코드의 서비스 종류 번호, 운송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국명표 바코드는 우편물 운송용기에 붙여 발송국·도착국, 용기 종류, 서비스 종류 등을 식별하는 표시이다.

**핵심 구분**

국제우편물은 무인우체국 배달함 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 국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EMS는 국내익일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한다. 국명표 바코드의 서비스 종류 번호는 EMS가 8, EMS 프리미엄이 9이다. 한 운송편으로 전량을 보낼 수 없을 때에는 EMS가 1순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국제우편물인 EMS는 무인우체국 배달함에 배달할 수 없는 제외 우편물이다.
틀린 표현: 무인우체국의 배달함에 배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EMS 등 국제우편물은 무인우체국 배달함 배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X
외국에서 국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EMS에 적용하는 배달 방식은 국내등기소포우편물이 아니라 국내익일특급우편물의 예이다.
틀린 표현: 국내등기소포우편물 배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올바른 표현: 국내익일특급우편물의 예에 따라 배달한다.

③ X
국명표 바코드의 서비스 종류 번호는 EMS와 EMS 프리미엄이 서로 다르다. EMS는 8, EMS 프리미엄은 9를 사용한다.
틀린 표현: EMS 프리미엄과 동일한 숫자를 사용한다.
올바른 표현: EMS는 8, EMS 프리미엄은 9로 구분한다.

④ O
한 운송편에 발송할 우편물량이 많아 일시에 모두 발송할 수 없을 때의 1순위는 EMS이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②의 '등기소포'와 '익일특급'을 혼동하거나, ③에서 EMS와 EMS 프리미엄을 같은 특급 서비스라는 이유로 동일 번호라고 판단하기 쉽다. 또한 무인우체국 배달함은 모든 등기성 우편물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우편물이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MS 문항에서는 배달 기준은 '국내익일특급', 국명표 번호는 'EMS 8·프리미엄 9', 운송 순위는 'EMS 1순위'로 나누어 판단한다. 무인우체국 배달 가능 여부는 먼저 국제우편물 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EMS는 배달은 익일특급의 예, 바코드는 8, 운송은 1순위이다. EMS 프리미엄의 바코드 번호는 9이다.

NoteBase

11. 우편물 수집 및 처리 업무를 바르게 수행한 사례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편창구 직원이 국전(우체국 앞) 우체통에 투함된 우편물을 수거하고 시스템에 물량을 등록하였다.
ㄴ. 선편을 통해 해외로 발송하는 우편물이 발견되어, 우표면에 국제날짜도장을 찍은 후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발송하였다.
ㄷ. 붙어 있는 우표의 액면가가 해당 일반우편요금보다 부족한 우편물이 발견되어, 우표면에 우편날짜도장을 찍어 발송인에게 반환하였다.
ㄹ. 표면에 '등기'라고 표시된 우편물이 발견되었지만, 등기취급수수료에 미달되는 금액의 우표가 붙어 있어 일반우편물로 취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통에서 수집한 우편물의 정리와 요금 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제선편우편물의 발송처, 요금부족우편물의 소인 여부, 등기 표시 우편물의 요금 충족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전 우체통 = 우체국 앞에 설치된 우체통이다.
소인 = 우표의 재사용을 막고 취급 일자를 나타내기 위해 우표면에 날짜도장을 찍는 처리이다.

**핵심 구분**

우편창구 직원은 국전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거하고 시스템에 물량 등을 등록한다. 수집한 국제우편물에는 국제날짜도장을 찍되, 항공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내고 선편우편물은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보낸다. 일반우편요금보다 우표 금액이 부족하여 발송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붙어 있는 우표에 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표면에 '등기'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붙인 우표 금액이 등기취급수수료에 미달하면 일반우편물로 취급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이 틀리므로 바르게 수행한 사례만의 조합이 아니다. 국전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거해 시스템에 물량을 등록한 ㄱ의 처리는 옳다. 그러나 선편 국제우편물의 발송처는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아니다. 틀린 표현: '선편우편물을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발송하였다.' 올바른 표현: '선편우편물에 국제날짜도장을 찍은 후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하였다.'

② O — ㄱ과 ㄹ이 모두 바른 처리이다. ㄱ처럼 우편창구 직원은 국전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거하고 시스템에 물량 등을 등록한다. ㄹ처럼 '등기' 표시가 있더라도 붙인 우표 금액이 등기취급수수료에 미달하면 일반우편물로 취급한다.

③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바르게 수행한 사례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ㄴ의 '선편우편물을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발송' 및 ㄷ의 '붙어 있는 우표에 우편날짜도장을 찍어 반환'이다. 올바른 표현: '선편우편물은 국제날짜도장을 찍어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하고, 일반우편요금보다 우표 금액이 부족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붙어 있는 우표에 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④ X —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바르게 수행한 사례만의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붙어 있는 우표에 우편날짜도장을 찍어 발송인에게 반환하였다.' 올바른 표현: '반환사유를 적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부전지를 붙이되, 우편물에 붙어 있는 우표 자체에는 날짜도장을 찍지 않고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모든 국제우편물의 발송처로 생각하기 쉽지만, 항공은 국제우편물류센터, 선편은 부산국제우체국으로 구분한다. ㄷ에서는 반환용 부전지에 날짜도장을 날인하는 것과 우편물에 붙은 우표에 날짜도장을 찍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집우편물 처리 문제에서는 먼저 국제우편물의 운송 방식별 발송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요금부족 우편물의 '부전지 날인'과 '붙은 우표 소인'을 분리하여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등기 표시만 보지 않고 등기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표가 붙었는지를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국전은 수거·등록, 국제우편은 항공-국제우편물류센터·선편-부산국제우체국, 요금부족 반환은 우표 소인 없음, 등기요금 부족은 일반 취급이다.

NoteBase

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취급함<br>○ 등기우편으로 취급되는 단계까지만 손해배상함<br>○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함<br>○ 등기번호의 첫째 자리가 '5'로 시작함 |

①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므로 그 결과를 PDA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고객이 희망하거나 긴급한 경우라도 접수 시 국내특급(익일특급)을 부가할 수 없다.

③ 반송할 경우에는 일반통상우편 취급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④ 접수부터 배달증을 생성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며 그 한도는 최대 5만 원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준등기우편물의 배달결과 등록, 부가취급, 반송 및 손해배상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더라도 배달결과의 전산 등록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준등기우편물은 접수부터 배달 전 단계까지 등기우편물처럼 기록하여 취급하고, 최종 배달은 수취인의 서명 없이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는 우편물이다.

**핵심 구분**

준등기는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면 배달 자체는 완료되지만, 그 배달결과는 전산으로 등록한다. 또한 다른 부가우편역무를 붙일 수 없고, 반송 시에는 일반통상우편물의 취급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등기취급되는 구간에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5만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한 뒤에도 배달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틀린 표현: 그 결과를 PDA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올바른 표현: 우편수취함에 투함한 배달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O
준등기우편물에는 국내특급 등 다른 부가우편역무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고객이 희망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도 접수 시 익일특급을 부가할 수 없다.

③ O
준등기우편물을 반송할 때에는 일반통상우편물의 취급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반송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④ O
준등기는 접수부터 배달 전 단계까지 등기취급되므로 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만 배상 대상이 되며, 실제 손해액을 5만원 한도에서 배상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우편수취함 투함으로 배달 완료'와 '배달결과 등록 불필요'를 같은 뜻으로 보는 데 있다. 수취인의 서명은 받지 않지만, 배달결과의 전산 등록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준등기 문항에서는 취급 구간과 최종 배달 방식을 나누어 판단한다. 접수부터 배달 전까지는 기록 취급, 최종 배달은 우편수취함 투함, 투함 후에는 배달결과 전산 등록이라는 순서로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준등기는 '수취함 투함, 결과 등록, 부가취급 불가, 배상 한도 5만원'으로 정리한다.

NoteBase

13. 다음 법령에서 (가) ~ (라)에 들어가는 수를 모두 더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가) 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 층이하의 위치에 (다) 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라) 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8 ② 9 ③ 10 ④ 11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고층건물 우편수취함의 설치 대상, 분리 설치 기준 및 설치 예외에 들어가는 수를 확인하여 합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빈칸을 조문 순서대로 3, 3, 3, 1로 대응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고층건물우편수취함 = 고층건물의 주거시설·사무소·사업소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편수취함이다.
우편물 접수처 = 건물에서 우편물을 받아 배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장소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른 설치 대상은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르면 한 곳에 전부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층 이하의 위치에 3개소 이내로 나누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1층 출입구, 출입구 근처의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 등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배달할 수 있으면 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3, (나)=3, (다)=3, (라)=1이고, 합계는 3+3+3+1=1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8은 네 빈칸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8’이며, 올바른 값은 3+3+3+1=10이다.

② X
9는 (가)=3, (나)=3, (다)=3, (라)=1을 모두 더한 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9’이며, 올바른 값은 10이다.

③ O
각 빈칸에 3, 3, 3, 1을 넣으면 3+3+3+1=10이므로 옳다.

④ X
11은 조문에 따른 네 수의 합보다 1 크다. 틀린 표현은 ‘11’이며, 올바른 값은 10이다.

**오답 포인트**

‘3층 이상’이라는 설치 대상과 ‘3층 이하’라는 분리 설치 위치를 서로 반대되는 수로 착각하거나, ‘3개소 이내’와 예외 장소의 ‘1층’을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특히 이상·이하에는 기준 수가 포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에서 설치 대상 층수를 먼저 찾고, 시행규칙에서 분리 설치의 위치·개소 수와 예외 장소의 층수를 차례로 찾는다. 빈칸을 조문 순서대로 적은 뒤 마지막에 한 번만 합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층건물 우편수취함은 ‘3층 이상, 3층 이하, 3개소 이내, 예외는 1층’으로 묶으면 합계가 10이다.

NoteBase

14. K-Packet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품이 고가일 경우에는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② 우편물 접수 시 내용품의 생산지를 필수로 입력한다.

③ 실중량이 3㎏, 부피중량이 4㎏일 경우에는 부피중량의 요금으로 접수한다.

④ 미국행 K-Packet은 상대국가에서 제공하는 종추적 정보, 행방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K-Packet의 접수 정보, 중량 제한, 부가서비스 및 미국행 우편물의 청구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K-Packet은 2*kg* 이하 소형물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해외로 보내는 국제우편서비스이다. 부피중량은 우편물이 운송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를 가로·세로·높이로 환산한 중량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접수 안내상 세관신고서에는 내용품의 생산지를 필수로 입력한다. 요금적용중량은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이지만, 그 값이 K-Packet 제한중량인 2*kg*을 넘으면 접수할 수 없다. K-Packet은 보험 등 부가서비스를 취급하지 않으며, 미국행은 상대국이 제공하는 종추적 정보 외의 행방조사·손해배상 등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K-Packet은 내용품이 고가이더라도 보험 부가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고가일 경우에는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 올바른 표현: 내용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K-Packet은 보험 취급이 불가능하다.

② O
- K-Packet 접수에 사용하는 세관신고서에는 내용품의 생산지(Country of Origin)를 필수로 입력한다.

③ X
- 실중량 3*kg*과 부피중량 4*kg* 중 큰 값은 4*kg*이지만, 이는 K-Packet 제한중량 2*kg*을 초과하므로 K-Packet으로 접수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부피중량의 요금으로 접수한다.
- 올바른 표현: 요금적용중량이 제한중량을 초과하므로 K-Packet으로 접수할 수 없다.

④ X
- 미국행 K-Packet은 상대국이 제공하는 종추적 정보는 이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행방조사 청구는 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종추적 정보, 행방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 올바른 표현: 상대국이 제공하는 종추적 정보만 이용할 수 있고 행방조사 등 기타 청구는 할 수 없다.

### 오답 포인트

③에서 큰 중량을 요금에 적용한다는 원칙만 보고 접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큰 중량을 정한 뒤에도 K-Packet의 2*kg* 제한을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는 종추적 조회와 행방조사 청구를 같은 서비스로 보는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수정보는 세관신고 필수항목을 확인하고, 중량 문제는 '실중량·부피중량 중 큰 값 결정 → 제한중량 초과 여부 확인'의 순서로 판단한다. 부가서비스와 청구권은 종추적, 보험, 행방조사를 각각 구분한다.

### 암기 포인트

K-Packet은 생산지 필수, 2*kg* 이하, 보험 불가이며 미국행은 종추적 정보만 가능하다.

NoteBase

15. EMS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 우편물 배송 부가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 가능하다.

② 비서류 접수 시 우편물의 실중량이 5,500g이고 가로 10㎝, 세로 20㎝, 높이 30㎝이면 체적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③ 부가서비스 중 수출신고서 발급 및 통관 대행은 부가 요금이 무료이며,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 가능하다.

④ 우편물의 도착국가에서 발생한 관세 및 세금을 발송인이 지불하는 부가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 가능하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EMS프리미엄의 주요 부가서비스별 접수관서와 요금 적용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서비스와 5급 이상 총괄우체국에서 접수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고, 실중량과 체적중량 중 큰 값을 요금적용중량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체적중량은 우편물이 운송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가로·세로·높이로 환산한 중량이다. 총괄우체국은 일정 지역의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우체국으로, 모든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을 뜻하지 않는다.

**핵심 구분**

EMS프리미엄 비서류 우편물은 실중량과 체적중량을 비교하여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수출신고서 발급대행과 수출통관 대행은 부가요금이 무료이고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반면 30*kg* 초과 70*kg* 이하 고중량서비스와 발송인 관세·세금 부담 서비스는 접수관서가 5급 이상 총괄우체국으로 제한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서비스는 모든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접수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5급 이상 총괄우체국에서 접수한다.
틀린 표현: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전국의 5급 이상 총괄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다.

② X
체적중량은 $10cm \times 20cm \times 30cm \div 6{,}000 = 1kg$이고 실중량은 $5{,}500g = 5.5kg$이다. 두 값 중 큰 실중량을 요금적용중량으로 삼는다.
틀린 표현: 체적중량의 요금을 적용한다.
올바른 표현: 실중량 5.5$kg$의 요금을 적용한다.

③ O
수출신고서 발급대행과 수출통관 대행은 부가요금이 무료이며,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우편취급국도 접수 범위에 포함된다.

④ X
도착국에서 발생한 관세와 세금을 발송인이 부담하는 서비스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접수관서는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이며, 이용 대상도 요금후납 계약고객으로 제한된다.
틀린 표현: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요금후납 계약고객이 5급 이상 총괄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④의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라는 표현이 함정이다. 서비스 내용만 익숙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접수관서와 대상고객까지 확인해야 한다. ②에서는 체적중량을 계산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실중량과 비교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MS프리미엄 부가서비스 문제에서는 서비스마다 '접수관서-대상고객-부가요금'을 묶어서 판단한다. 중량 문제가 나오면 체적중량을 계산한 뒤 실중량과 비교하여 큰 값을 선택한다.

### 암기 포인트

수출신고서 발급·통관 대행은 무료·전국 우체국, 고중량·발송인 관세 부담은 총괄우체국이다. 요금 중량은 실중량과 체적중량 중 큰 값이다.

NoteBase

16. 국제회신우표권(IR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표류에 속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20장 초과 시 할인하여 판매한다.

② 국제회신우표권을 교환해 줄 때에는 오른쪽 해당란에 국제날짜도장을 날인한다.

③ 현재 우리나라는 이스탄불 국제회신우표권을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해 준다.

④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국제회신우표권은 '반납 및 인수증'을 첨부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납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회신우표권(IRC)의 판매 제한, 교환 절차, 유효한 권종, 교환 후 반납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판매와 교환을 나누고, 교환할 때의 날짜도장 위치와 교환 완료 후의 처리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제회신우표권(IRC)은 외국의 수취인이 회신 우편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발송인이 미리 보내 주는 증표이다. 수취인은 이를 해당 국가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비등기 우선우편물 또는 항공서장의 최저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할 수 있다.

**핵심 구분**

판매 단계에서는 왼쪽 해당란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교환 단계에서는 진위와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오른쪽 해당란에 국제날짜도장을 날인한다. UPU 협약 규칙 제18-106은 교환한 국제회신우표권에 교환 우체국의 날짜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국제사무국으로 반송하도록 정한다. 현재 유효한 권종은 이스탄불권이 아니라 아비장권이며, 아비장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환할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국제회신우표권은 우표류에 속하지만 할인판매 대상이 아니다. 20장 초과 판매를 요구하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하여 판매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틀린 표현: '20장 초과 시 할인하여 판매한다'
올바른 표현: '20장 초과 판매를 요구하면 사용 목적을 확인하여 판매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할인판매하지 않는다.'

② O
국제회신우표권을 우표류로 교환할 때에는 진위와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오른쪽 해당란에 국제날짜도장을 날인한다. 판매 시의 왼쪽 해당란과 교환 시의 오른쪽 해당란을 구별해야 한다.

③ X
이스탄불 국제회신우표권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현재 유효한 권종은 아비장 국제회신우표권이다. 국제회신우표권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비등기 우선우편물 또는 항공서장의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틀린 표현: '현재 우리나라는 이스탄불 국제회신우표권을 교환해 준다'
올바른 표현: '현재 교환할 수 있는 권종은 아비장 국제회신우표권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④ X
우표류와 교환을 마친 국제회신우표권은 포스트넷에 '반납 및 인수증(청구 및 송증)'을 등록·첨부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로 반납한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이 반납처가 아니다.
틀린 표현: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납한다'
올바른 표현: '우정사업조달센터로 반납한다.'

### 오답 포인트

①의 '20장 초과'를 할인 기준으로 오해하거나, 판매 때의 왼쪽 날인과 교환 때의 오른쪽 날인을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④의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우정사업조달센터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교환 완료권의 반납처는 우정사업조달센터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회신우표권 문제는 '판매-교환-반납'의 세 단계로 나누어 판단한다. 판매는 다량판매 제한과 왼쪽 날인, 교환은 진위·유효기간 확인과 오른쪽 국제날짜도장, 반납은 반납 및 인수증 첨부와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판매는 왼쪽, 교환은 오른쪽, 교환 후 반납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다.

NoteBase

17.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접수와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계약 고객이 국제우편스마트접수를 이용하여 1회에 2통의 우편물을 방문접수 신청할 경우, 방문접수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ㄴ. 발송우체국은 발송인이 원화(KRW)로 기재한 보험가액을 특별인출권(SDR)으로 환산하여 기표지(운송장) 해당란에 작성한다.
ㄷ. 노르웨이로 비서류 발송 시 도착국가 세관으로부터 승인 완료(AC)를 받은 후 발송해야 한다.
ㄹ. 우편물이 도착국가에서 배달불능으로 반송되어 돌아온 경우, 반송 취급료는 무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제특급우편(EMS)의 방문접수 수수료, 보험가액 기재 방식, 사전통관 승인 및 배달불능 반송료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방문접수 수수료: 비계약 고객은 1회 방문 시 첫 1통 3,000원, 추가 1통당 1,000원이며 최대 5,000원이다.
보험가액 기재: EMS 기표지의 보험가액은 원화(KRW)로 기재한다.
사전통관 승인: 노르웨이행 비서류 우편물은 도착국 세관의 승인 완료(AC)를 받은 뒤 발송한다.
배달불능 반송: 도착국에서 배달하지 못해 돌아온 EMS의 반송 취급료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2통의 방문접수 수수료는 3,000원에 추가 1통분 1,000원을 더한 4,000원이며, EMS 보험가액은 SDR로 환산해 적는 것이 아니라 원화(KRW)로 기재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ㄴ이 아니라 ㄷ·ㄹ이다.

② X — ㄷ은 맞지만 ㄱ이 틀리다. 2통 신청 시 5,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ㄷ이 아니라 ㄷ·ㄹ이다.

③ X —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EMS 기표지의 보험가액은 SDR 환산액이 아니라 원화(KRW)로 기재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ㄴ·ㄹ이 아니라 ㄷ·ㄹ이다.

④ O — ㄷ과 ㄹ이 모두 맞다. 노르웨이행 비서류 EMS는 도착국 세관의 승인 완료(AC) 후 발송하며, 도착국에서 배달불능으로 반송된 EMS에는 반송 취급료가 없다.

**오답 포인트**

ㄱ의 '최대 5,000원'을 2통의 수수료로 오해하기 쉽다. 최대액은 통수별 금액을 합산한 뒤 적용하므로 2통은 4,000원이다. 또한 ㄴ은 국제 보험소포의 SDR 환산 기재 방식과 EMS의 원화 보험가액 기재 방식을 섞은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수료 문제는 기본액·추가액·최대한도를 차례로 적용하고, 기표지 문제는 우편물 종류가 EMS인지 국제소포인지 먼저 구분한다. 국가별 사전통관 조건과 배달불능 반송료는 각각 별도의 취급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MS 2통 방문접수는 4,000원, 보험가액은 원화, 노르웨이 비서류는 AC 후 발송, 배달불능 반송료는 없음이다.

NoteBase

18. 국제우편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금체계는 구성 내용에 따라 국내 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 도착국 내에서의 취급비로 구분한다.

② 요금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우편물 종별에 따라 선편요금과 항공요금으로 구분한다.

④ 선편우편물은 실중량으로 우편요금을 계산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요금체계의 구분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운송편별 구분, 우편물 종별 구분, 구성내용별 구분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실중량은 포장된 우편물을 저울로 직접 잰 실제 무게이다.

**핵심 구분**

운송편별로는 선편요금과 항공요금으로 구분한다. 우편물 종별로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국제특급우편물(EMS), K-Packet 등의 요금으로 구분한다. 구성내용별로는 국내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 도착국 내 취급비로 구분한다. 국제우편규정은 국제우편요금 등을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현행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도 항공통상우편요금과 선편통상우편요금을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제우편 요금은 구성내용에 따라 국내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 도착국 내 취급비로 구분한다.

② O —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은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X — 선편요금과 항공요금은 우편물 종별이 아니라 운송편별 구분이다. 틀린 표현: '우편물 종별에 따라 선편요금과 항공요금으로 구분한다.' 올바른 표현: '운송편별에 따라 선편요금과 항공요금으로 구분한다.' 우편물 종별 구분은 통상우편물요금, 소포우편물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등이다.

④ O — 선편우편물에는 저울로 잰 실제 무게인 실중량을 적용하여 우편요금을 계산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운송편별'과 '우편물 종별'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선편·항공은 보내는 운송수단의 구분이고, 통상·소포·EMS 등은 우편물 종류의 구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편·항공이 나오면 운송편별 구분, 통상·소포·EMS 등이 나오면 우편물 종별 구분, 국내취급비·운송요금·도착국 취급비가 나오면 구성내용별 구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운송편은 선편·항공, 우편물 종별은 통상·소포·EMS, 구성내용은 국내취급·운송·도착국 취급이다.

NoteBase

19. 만국우편연합(UPU)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21차 UPU 총회는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ㄴ. 연합의 상설기관인 관리이사회는 연합업무의 수행, 지원, 연락, 통보 및 협의 기관으로 기능한다.
ㄷ. 기준화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한다(1SDR = 1,749원).
ㄹ.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회의와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를 함께 사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만국우편연합(UPU)의 총회 개최 연도, 기관별 기능, 기준화폐, 언어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21차 UPU 총회는 1994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관리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에 연합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활동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수행·지원·연락·통보·협의 기능은 국제사무국이 담당한다. UPU의 기준화폐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이고, 이 문항에서 적용하는 환산액은 1SDR당 1,749원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회의와 문서 발간에는
프랑스어·영어·스페인어·독일어·포르투갈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가 사용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ㄱ과 ㄴ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ㄱ의 '1995년'은 '1994년'으로 고쳐야 하며, ㄴ의 '관리이사회'는 '국제사무국'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ㄱ의 '1995년'은 '1994년'으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③ X
ㄹ은 옳지만 ㄴ이 틀려 옳은 설명의 조합이 아니다. ㄴ의 '관리이사회'는 '국제사무국'으로 고쳐야 하며, 옳은 조합은 ㄷ과 ㄹ이다.

④ O
ㄷ과 ㄹ은 모두 옳다. UPU는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회의와 문서 발간에 제시된 8개 언어를 사용한다.

### 오답 포인트

ㄱ은 서울 개최 사실만 보고 연도를 놓치기 쉽고, ㄴ은 국제사무국의 기능을 관리이사회의 기능으로 바꿔 놓은 선지이다. 특히 '수행·지원·연락·통보·협의'가 국제사무국을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UPU 문항에서는 '서울 총회=1994년', '연합 업무의 계속성·감독=관리이사회', '수행·지원·연락·통보·협의=국제사무국', '기준화폐=SDR', '공용어=프랑스어'로 대응시켜 각 문장을 먼저 판단한 뒤 조합한다.

### 암기 포인트

서울 총회 1994년, 실무 지원은 국제사무국, 화폐는 SDR,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NoteBase

20. 한중해상특송 우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 우편물이다.
ㄴ. 국제우편스마트접수 대상 우편물이다.
ㄷ. 우체국과 계약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서비스이다.
ㄹ. 부산항-위해(威海, Weihai)항 간 운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을 활용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한·중해상특송의 통관 방식, 이용 대상, 접수 방식, 실제 선박 운송 구간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중해상특송은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의 위해항 사이에서 선박을 이용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송하는 국제우편서비스이다. 전자상거래 물량(B2C)을 발송하는 e-shipping 이용 기업이 접수 우체국과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통관에는 사전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선지별 해설**

ㄱ O: 통관 방식은 우편물 정보를 세관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통관정보 제공 방식이므로 옳다.
ㄴ X: '국제우편스마트접수 대상 우편물'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e-shipping을 이용하는 고객인 기업이 접수 우체국과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는 우편물이다.
ㄷ O: 전자상거래 물량(B2C)을 발송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e-shipping 이용 기업이 우체국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옳다.
ㄹ X: '부산항-위해항'이 틀리다. 올바른 선박 운송 구간은 한국의 인천항과 중국의 위해항 사이이다.

① O: 옳은 설명인 ㄱ과 ㄷ만 묶었으므로 정답이다.
② X: ㄴ과 ㄹ은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③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ㄴ을 제외한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ㄹ을 제외한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의 '스마트접수'와 실제 이용 요건인 'e-shipping 이용 기업의 별도 계약'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ㄹ은 중국 측 항구인 위해항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한국 측 항구는 부산항이 아니라 인천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중해상특송은 '전자상거래 B2C-계약 기업-사전통관정보-인천항·위해항'의 네 요소로 나누어 각 설명을 판단한다. 조합형에서는 네 문장의 O/X를 먼저 확정한 뒤 옳은 문장만 포함한 선택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한·중해상특송은 인천-위해, B2C 계약 기업, 사전통관이다.

NoteBase